

#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99-2340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6.05.07.)로부터 6개월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2026.04.17.(금)	2026.06.02.(화)	2026.06.08.(월)	2026.06.11.(목)	2026.06.12.(금)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6.02.(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130**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17.(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107** 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정	2026.06.08.(월)	2026.06.11.(목)	2026.06.12.(금)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건본주택 (주소: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494)</li> </ul>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광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05.07.)로부터 6개월 적용됩니다.

###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산54-3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7층, 지상 32층 7개동 일반분양 1,077세대 중 잔여 83세대
- 입주시기 : 2030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130	01	084.9099A	84A1	26	101	202, 302, 402, 702, 802, 902, 1502, 1802, 2002, 2102
					102	104, 204, 504, 904, 1004, 1304, 2204, 2804, 2904
					103	604, 1104, 1204, 1704, 1904, 2004, 2104
	02	084.8671D	84D	52	101	105, 605, 805, 905, 1105, 1305, 1405, 2005
					102	101, 201, 301, 401, 601, 1201, 1401, 1501, 1601, 1801, 2101, 2201, 2301, 2501, 2701, 2901
					103	201, 501, 601, 701, 1601, 1801, 2001, 2201, 2401, 2601, 2701, 3001
					106	201, 501, 601, 801, 1001, 1201, 1601, 2101, 2201, 2401, 2501, 2601, 2801, 2901, 3101, 3201
	03	162.7498A	162PHA	1	102	3204
	04	162.3499B	162PHB	2	104	3203
					107	3203
	05	170.5257A	170PH	1	101	2302
	06	170.3095B	170	1	107	104
	합 계				83	-

■ 공급금액 표

(단위 : 원, 세대)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						잔금 (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계약 후 1개월 내	2027. 1. 20	2027. 10. 20	2028. 7. 20	2029. 5. 23	2029. 10. 19	2030. 3. 20	입주지정일	
84A1	101동 2호	2층	1	276,274,000	545,726,000	-	822,000,000	10,000,000	31,1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287,700,000	
		3~10층	5	279,635,000	552,365,000	-	832,000,000	10,000,000	31,6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291,200,000	
		11~20층	3	282,996,000	559,004,000	-	842,000,000	10,000,000	32,1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294,700,000	
		21층이상	1	286,357,000	565,643,000	-	852,000,000	10,000,000	32,6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298,200,000	
	102동 4호 103동 4호	1층	1	272,913,000	539,087,000	-	812,000,000	10,000,000	30,6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284,200,000	
		2층	1	276,274,000	545,726,000	-	822,000,000	10,000,000	31,1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287,700,000	
		3~10층	4	289,718,000	572,282,000	-	862,000,000	10,000,000	33,1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301,700,000	
		11~20층	6	293,079,000	578,921,000	-	872,000,000	10,000,000	33,6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305,200,000	
		21층이상	4	296,440,000	585,560,000	-	882,000,000	10,000,000	34,100,000	88,200,000	88,200,000	88,200,000	88,200,000	88,200,000	88,200,000	308,700,000	
		84D	101동 5호	1층	1	272,913,000	539,087,000	-	812,000,000	10,000,000	30,6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3~10층	3			289,718,000	572,282,000	-	862,000,000	10,000,000	33,1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301,700,000	
11~20층	4			293,079,000	578,921,000	-	872,000,000	10,000,000	33,6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305,200,000	
102동 1호	1층		1	272,913,000	539,087,000	-	812,000,000	10,000,000	30,6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284,200,000	
	2층		1	276,274,000	545,726,000	-	822,000,000	10,000,000	31,1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287,700,000	
	3~10층		3	279,635,000	552,365,000	-	832,000,000	10,000,000	31,6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291,200,000	
	11~20층		5	282,996,000	559,004,000	-	842,000,000	10,000,000	32,1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294,700,000	
	21층이상		6	286,357,000	565,643,000	-	852,000,000	10,000,000	32,6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298,200,000	
103동 1호 106동 1호	2층		2	266,191,000	525,809,000	-	792,000,000	10,000,000	29,6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277,200,000	
	3~10층		7	269,552,000	532,448,000	-	802,000,000	10,000,000	30,1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280,700,000	
	11~20층		5	282,996,000	559,004,000	-	842,000,000	10,000,000	32,1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294,700,000	
	21층이상		14	286,357,000	565,643,000	-	852,000,000	10,000,000	32,6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298,200,000	
162PHA	102동 4호		32층	1	753,447,500	1,487,775,000	148,777,500	2,390,000,000	10,000,000	109,500,000	239,000,000	239,000,000	239,000,000	239,000,000	239,000,000	239,000,000	836,500,000
162PHB	104동 3호		32층	1	759,752,500	1,500,225,000	150,022,500	2,410,000,000	10,000,000	110,500,000	241,000,000	241,000,000	241,000,000	241,000,000	241,000,000	241,000,000	843,500,000
	107동 3호		32층	1	743,990,000	1,469,100,000	146,910,000	2,360,000,000	10,000,000	108,000,000	236,000,000	236,000,000	236,000,000	236,000,000	236,000,000	236,000,000	826,000,000
170PH	101동 2호		23층	1	784,972,500	1,550,025,000	155,002,500	2,490,000,000	10,000,000	114,500,000	249,000,000	249,000,000	249,000,000	249,000,000	249,000,000	249,000,000	871,500,000
170	107동 4호	1층	1	379,875,700	750,113,000	75,011,300	1,205,000,000	10,000,000	50,250,000	120,500,000	120,500,000	120,500,000	120,500,000	120,500,000	120,500,000	421,750,000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단위 : 원)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하나은행	284-910028-13505	신한자산신탁㈜
중도금, 잔금		284-910028-14105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 101동 1304호 홍길동 → “1011304홍길동”)
- 분양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 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 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람에 착오 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에,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약식표기 (타입)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1, 84D	25,000,000	2,500,000	22,500,000
162PHA, 162PHB, 170PH, 170	40,000,000	4,000,000	36,000,000

2)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하나은행	284-910028-20305	신한자산신탁㈜
잔금		284-910028-19305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추가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 등이 각각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를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해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예시 : 101동 301호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301홍길동’으로 / 102동 504호의 경우 ‘1020504홍길동’으로 기재 )

■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선)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 계약의 경우, 계약자 대상으로 추후 별도 계약일정을 통보 할 예정입니다.

※ 무순위(사후) 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자세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li> <li>■ 외국인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li> </ul>
청약신청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li> <li>-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li> <li>-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li> <li>-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li> </ul> </li> </ul>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li> <li>■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b>900%</b>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li> </ul>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b>조회기간</b> : 2026.06.11.(목) ~ 2026.06.20.(토) (10일간)</li> <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공일시</b> : 2026.06.11.(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b>제공대상</b>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 <b>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li> <li>-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li> <li>※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li> </ul>
	○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li> </ul>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제 3자 대리인 계약시		○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li> </ul>
		○	인감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li> </ul>
		○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li> <li>※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li> </ul>
		○	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명 또는 날인</li> </ul>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기타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li> </ul>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06.12.(금) 9:00~14: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현장수납 불가)</li> <li>•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li> <li>•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li> <li>•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li> <li>• 용도에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에 한함.</li> <li>•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li> <li>• 전자수입인지 사이트(<a href="https://www.e-revenuestamp.or.kr">https://www.e-revenuestamp.or.kr</a>) 또는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가능</li> </ul>
	○		신분증		
	○		자격검증서류		
		○	추가 개별통지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인감도장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인지세 납부)		
제 3자 대리인 계약시	○		위임장	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li> <li>•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 불가) ※ 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 위임용</li> </ul>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li> </ul>

- ※ 상기 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예. 아파트 계약용, 아파트 계약 위임용 등)
-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참고사항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사

구분	사업주체(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호명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쌍령파크개발	롯데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10111-3543801	134211-0261159	110111-001476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동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산55-2 1호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잠원동)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427/main/index.do>)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494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견본주택)

■ 분양문의 : 1899-2340